



바른 인성과 실력으로 꿈을 향해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학교

2025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안)



2025. 3.

부 발 중 학 교 교 무 부

< 차례 >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1
가.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1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1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2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3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3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운영	3
4.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방안	4
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시 유의사항	4
나.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 비밀누설 금지의무	4
다. 신고 및 접수 절차	5
라. 신고 방법	5
5.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방안	5
가.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	5
나. 사안 발생 보고	6
다.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가. 교육활동 보호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은 교육활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의미

1) 법률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그 주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소속된 학생’이란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하고,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등’에는 위 학생과 보호자 외의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해당할 수 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가) ‘교육활동 중’의 의미

- (1)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교육 활동’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 (2)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실 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교원’의 범위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1)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을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교육부고시’ 라고 함) 제2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근거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무고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업무방해, 손괴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유의점

-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교원지위법」은 형법 등 형사처벌 조항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로 형사상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1) 필요성

- 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 및 사기를 저하시켜 학교 교육력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나) 따라서 교원과 학생이 상호존중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교원들은 교육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 다) 이에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인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원 등 모든 교육공동 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운영

- 1)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 2) 시기: 연 1회 이상
- 3) 방법

- 가) 교직원: 교육 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직원 회의 등 자체 연수, 양교육연수원 등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 나) 학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예방 교육 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 실시
 - 다) 학생의 보호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
- 4)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등(「교원지위법 시행령」제21조)

대상	내용	시기	자료
교직원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20.(목) 직원회의	
학생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9.(수) 6교시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 - 동영상 자료
학생의 보호자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④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9.(수) 학부모 총회	

4.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방안

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시 유의사항

- (1)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 (2)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 시에는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 (4)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5)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결과 결정 전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침해 보호자 등을 단정 짓지 말고,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6) 교육지원청 사안조사 및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시,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7)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나.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 비밀누설 금지의무

1) 신고의무(「교원지위법」제28조)

- 「교원지위법」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2) 보고의무(「교원지위법」제20조 및 제28조)

- 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였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경우,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교육감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 등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인 경우, 교육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3) 비밀누설 금지의무(「교원지위법」제30조)

- 업무담당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 업무수행 시 알게된 신고자 관련 자료(개인정보 등)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다. 신고 및 접수 절차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	관련자 상태 확인	접수 보고
신고접수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 (학교 안팎 경로를 통해 접수) ※ 학교 밖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학교장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등 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분리조치 실시(학교장) •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장, 24시간 이내)

라. 신고 방법

1) 학교 안

- 업무 담당자(교무계), 교권보호책임관(교감), 교장 등 관리자에 신고

2) 학교 밖

-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전화[평일 09:00~18:00])
- 각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
- 112 경찰청(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5.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방안

가.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

1) 피해교원 대응요령

가) 침해행위 중단 요청

- 동료교사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또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 학교 관리자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신고
- 침해 관련자와의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제출
- 필요 시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심리 상담 지원 요청(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2)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가) 사안 발생 인지 즉시 개입

나) 교육현장 안정화

-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필요)
- 필요 시 피해교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안정시키기

다) 사안 신고

- 24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 보고

- ※ 유선 · 구두 보고 또는 사안 신고서 공문 제출
- ※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으로 사안 신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유선 · 구두로 사안 신고하고, 추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라)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 학생의 침해행위와 관련한 제반 상황 알리기
- 사안 발생 안내 및 면담 일정 협의 등

※ 보호자 연락 시 참고사항

-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전달한다.
- 피해교원과 기타 관련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보호한다.
- 발생 사안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한다.
-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절차 및 일정 등을 안내하여 향후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사안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접수(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희망 시 필수 제출)
-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조퇴, 병가, 특별휴가,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안내
 - 응급처치, 병원후송 등 응급조치
 -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실시 및 연계 및 조언
 - 심리 상담, 법률상담,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등
- 피해교원 및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나. 사안 발생 보고

1) 피해교원 대응요령

- 가)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나) 필요 시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증거자료 제출
- 다)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다.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가) 피해교원 및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나) 사안 파악
 - 피해교원 면담
 - 피해교원 상태 및 요청사항 확인

※ 필요한 보호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희망 여부, 분쟁조정 신청 여부 등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전후 사정, 동기, 피해정도 등
-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관련자 상태 확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
-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가능

다) 그 밖의 사안 파악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 수집
 -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 파악
- ※ 침해 관련 학생의 평소 품행, 과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이력, 교우관계, 과거 피해교원과 관련자의 평소 관계, 피해교원의 피해 정도,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간 사과나 합의 여부, 피해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침해 관련 학생의 장애 여부 등

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참고인 진술서 작성
- ※ 참고인 진술서 작성 시 사안 관련 당사자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작성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
- 피해교원 사안 신고서 제출 후 5일(주말, 공휴일 미포함)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 경기교권 보호지원센터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의견서, '참고인 진술서'를 공문으로 제출

※ 사안 발생 보고를 위한 사안 파악 과정에서 주의사항

- 업무담당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유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 면담 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 후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조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연계되지 않도록 주의, 문답시에는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유도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파악

※ 피해교원,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시 주의사항

(피해교원)

- 초기 상담 시 피해교원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 경청 및 적절한 위로와 지지
- 피해교원이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 파악
- 사안 처리 절차 및 내용, 진행 과정, 보호조치 등 설명

(침해 관련 학생)

- 초기 상담 과정에서 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침해 관련 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경청
- 사안처리 절차 및 내용, 진행과정 등을 설명해 주고,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
- 피해교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교원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느끼는 감정은 수용하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침해 관련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주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안의 내용이나 정황에 대해 문의할 때는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조치수위에 대해 언급하거나 동조·반박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주의하여 반응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자녀(학생)의 침해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논쟁하기보다는 접수하는 태도로 반응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피신청인 의견서 작성 방법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을 통한 진술에 대해 안내
- 침해 관련 학생 측이 피해교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교원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교원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안내
-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을 안내하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

(공통)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학생(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및 학생의 보호자가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양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음
- 양 당사자, 참고인(목격자) 등이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별지)

접수번호		접수일		(2)쪽 중 (2)쪽
------	--	-----	--	-----------------

※ 사안 내용 기록을 위해 필요시 활용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를

희망합니다. 희망하지 않습니다.

- 제도 도입 취지: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및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함.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함(「교원지위법」 제20조제2항)
 -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는 가해 추정자의 의미임
-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분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20 년 월 일

피해교원 : (서명 또는 인)

부발중학교장 귀중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침해 관련자	성 명		소속/ 학년/ 반	
	연락처		피해교원과의 관계	
	주 소			
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의견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목격자(참고인)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성명 : 관계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기타입증자료(첨부)	※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 자료명 기재 후 첨부			
분쟁조정절차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함		<input type="checkbox"/> 신청하지 않음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작성일			작성자	(서명)

참고인 진술서

참고인	성 명			소속/ 학년/ 반
	연락처			피해교원 또는 침해 관련자와의 관계
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목격한 사실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입증자료 첨부		※ 필요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작성일				작성자 (서명)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직위/성명
피해교원	소속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교육경력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정규교원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input type="checkbox"/> 담임 여부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사 여부	
침해 관련자	소속		학년/반
	성명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소		
	연락처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보호자	성명	<i>※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i>	연락처
사안 내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i>(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i>	
	사안 개요	<i>신고서, 의견서, 진술서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사용 가능)</i>	
쟁점사안	피해교원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3. 1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A학생이 책상 밑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수업 중 휴대 전화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학생이 “아 XX”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음. • 피해교원 신고서, 진단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B교사가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고 야단을 치자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교사를 밀친 것이고 욕설은 하지 않았음. • 침해 관련자(학생) 의견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보호자의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임.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겠음. • 학부모 문답서 제출됨. 	
	목격자 (참고인)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자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성명 : 관계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 목격자 진술 내용 - 	

사안 종결 확인서

성 명	
소속학교 /직급	
연락처	
사안 종결 희망 사유	
기타 의견	
2000년 00월 00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부발중학교장 귀하	